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54
----------	------

2013년 7월 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3년 6월 12일, 조규영 의원 외 1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13년 7월 5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: 조규영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,
 - 새롭게 변경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속가능 및 지속가능성평가 관련 용어정의를 삭제(안 제2조)
-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·에너지
분과위원회, 생태분과위원회, 자원순환분과위원회,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
두고, 각각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안석수)

가.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, 자문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고, 분과위원회 개편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제안배경

-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을 제출하면서, 부칙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자문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였음.
-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, 「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문기능」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부칙의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의결한 바 있음.
- 따라서 현재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문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고, 분과위원회 개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다. 검토의견

- 1) 지속가능 및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내용삭제(안 제2조제1호, 제2호 삭제)
 - 「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자문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 기능의 중복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.

- 2)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 관련(안 제8조)
 -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외 환경정책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,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, 생태분과위원회, 자원순환분과위원회,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두고, 각각의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 없음.

현 행		개 편
서울행동21 실천분과		
기후행동분과	⇒	기후·에너지분과 (통합 : 3개 → 1개 분과)
환경교육분과		
-	⇒	자연생태분과, 자원순환분과, 환경보건분과(신설 3)
지속가능발전분과	⇒	폐지(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)

〈그림 1〉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

〈표 1〉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기능

<p>기후·에너지 분과</p>	<p>기후변화· 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,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,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,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·지원, 환경 관련 행사 추진</p>
<p>자연생태분과</p>	<p>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·자문,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, 도시생태계, 물순환, 도시녹지, 도시농업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,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</p>
<p>자원순환분과</p>	<p>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, 재이용·재사용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,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 사업 발굴·추진,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</p>
<p>환경보건분과</p>	<p>대기질 개선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, 친환경 먹을거리 등 시민 건강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, 악취·소음·방사능 등, 생활 관련 자문 및 홍보·교육 등</p>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5호, 제8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기후변화·에너지 관련 정책자문,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등
8. 생태계 보전 및 녹지이용 관련 정책자문 및 자치구·시민·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사업 개발·지원 등
9.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정책지원 및 녹색구매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등
10. 대기, 먹거리, 악취, 소음 등에 대한 자문 및 시민교육·홍보활동 등 시민소통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, 생태분과위원회, 자원순환분과위원회,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,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위원회의 사업계획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·조정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, 생태분과위원회, 자원순환분과위원회,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 : 기후변화·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,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,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,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·지원, 환경관련 행사 추진
2. 생태분과위원회 :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·자문,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, 도시생태계, 물순환, 도시녹지, 도시농업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,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
3. 자원순환분과위원회 :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, 재이용·재사용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,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·추진,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
4. 환경보건분과위원회 : 대기질 개선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, 친환경 먹을거리 등 시민건강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,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, 악취·소음·방사능 등, 생활 관련 자문 및 홍보·교육 등

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④ 분과위원회는 의안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정원 외로 한다.

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분과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
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<u>1. 지속가능(“지속가능”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효과·사회적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이하 같다)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·자문</u></p> <p><u>2. 서울특별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부의한 주요 정책·계획·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·자문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5.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시민·기업의 참여유도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<u>1. <삭제></u></p> <p><u>2. <삭제>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기후변화·에너지 관련 정책자문, 시민 실천모델개발 및 사업추진 등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생태계 보전 및 녹지이용 관련 정책자문 및 자치구·시민·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사업 개발·지원 등</u></p> <p><u>9. 자원절약 및 재활용 관련 정책지원 및 녹색구매 관련 활성화사업 추진 등</u></p> <p><u>10. 대기, 먹을거리, 악취, 소음 등에 대한 자문 및 시민교육·홍보활동 등 시민소통</u></p>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1.당연직위원 :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 기후환경본부장·한강사업본부장·<u>공원 녹지국장</u>·도시계획국장·도시안전실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당연직위원 :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 기후환경본부장·한강사업본부장·<u>푸른 도시국장</u>·도시계획국장·도시안전실장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위원장과 부위원장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부위원장은 <u>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 행동21실천분과위원회, 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, 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, 환경교육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이라 한다)의 각 위원장이 되며,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한다.</u>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5조(기획조정위원회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기획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위원회의 사업계획수립 및 지속가능성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·조정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장과 부위원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부위원장은 <u>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, 생태분과위원회, 자원순환분과위원회,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,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기획조정위원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기획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위원회의 사업계획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·조정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<u>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, 지속가능발전위원회, 시민·기업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서울기후행동21실천분과위원회 : 서울행동21의 실천 및 이행사항 점검, 자치구의 의제21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, 시민단체, 기업등과 시·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·운영, 환경개선·보전 프로그램 개발, 환경교육·홍보, 환경감시 활동, 의제21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</u></p>	<p>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<u>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, 생태분과위원회, 자원순환분과위원회,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기후·에너지분과위원회 : 기후변화·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,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,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,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·지원, 환경관련 행사 추진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<u>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</u> :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·자문 및 이행점검,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,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 제시 등</p>	<p>2. <u>생태분과위원회</u> :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·자문,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 사업, 도시생태계, 물순환, 도시녹지, 도시농업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, 시민실천 사업 발굴 등</p>
<p>3. <u>서울기후행동분과위원회</u> : 기후변화 관련 정책대안제시,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시민·기업의 참여유도, 기후변화관련 대내·외 활동</p>	<p>3. <u>자원순환분과위원회</u> :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, 재이용·재사용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,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·추진 등,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</p>
<p>4. <u>환경교육분과위원회</u> : 환경교육종합 계획 수립·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·지원, 환경교육 및 홍보</p>	<p>4. <u>환경보전분과위원회</u> : 대기질 개선 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, 친환경 먹거리 등 시민건강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,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, 악취, 소음, 방사능 등, 생활 관련 자문 및 홍보·교육 등</p>
<p>③ <u>서울의제21실천협의회</u>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, <u>지속가능발전위원회</u>와 <u>시민·기업협력위원회</u>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</p>	<p>③ <u>분과위원회</u>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⑥ (생략)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